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Protecting every child's right to learn

뉴욕시 공립학교의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또는 교육부 (DOE)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기를 원하거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뉴욕시 공립학교 (NYC public schools)는 무료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학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학교 기록들이나 다른 중요한 문서들이 모국어로 번역되도록 요청하거나 학교나 교육부 직원들과의 만남에 통역이 준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모든 비영어권 학부모들은 무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가 통역이나 번역을 요청했다고 해서, 자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 (English Language Learner: ELL)'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스스로 통역할 사람을 구해 오도록 요구 받아서는 안되며, 자녀 또한 부모를 위해 번역이나 통역을 요청 받아서도 안된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언어는 무엇인가?

번역과 통역은,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음의 9 가지 언어에서 가능해야 한다 -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모국어에 맞는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언제 번역 (translation)을 제공해야 하는가?

교육부는 당신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들에 대하여 시기적절하게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포함한다:

- 일반적인 공지서 - 학부모-교사 간 회의 (conferences), 학생 및 부모를 위한 안내서 (handbooks), 학교 지원 양식 (application forms) 등
- 자녀에 관한 서류 - 성적표 (report cards)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s) 등

교육부는 언제 통역 (interpretation)을 제공해야 하는가?

교육부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학교 또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는 학부모-교사 간 회의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 회의를 위해 부모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등록 및 입학 을 돕는 가족환영센터 (Family Welcome Centers)도 부모가 자녀의 학교 등록 절차를 밟을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부모가 교육감 (superintendents) 사무실에 전화를 할 경우에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되어 직접 대화하기 원하는 교육부 사무실이나 학교에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역을 위해 직접 통역하는 사람을 보내거나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전화 통역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학교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학교는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

모든 학교는 학부모에게 부모의 권리 및 책임장전 (Bill of Par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학교는 나에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 모든 학교에는 언어 관련 서비스 담당자 (Language Access Coordinators)가 있으며, 이들은 학교가 부모에게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교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만일 내가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번역 혹은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면, 전화 311 번이나 교육부의 불만신고 접수번호 (718-935-2013) 를 이용할 수 있다.

좀 더 질문하기 원하십니까?

Jill Chaifetz Education Helpline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월요일부터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866-427-6033 (무료전화)

Translation assistance provided by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CID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rv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IDA is a federally funded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serving Korean-American families in Queens, Nassau and Suffolk County, NY. www.cidainfo.com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본 문건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본건은 AFC의 의견을 개진함 없이 기존의 정책 혹은 법률을 요약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혹은 변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Copyright © August 2015 by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Inc.

www.advocatesforchildren.org